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85

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임종득・김기웅・김형동

서일준 · 김예지 · 박수민

강선영 · 강대식 · 서천호
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·대비·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 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는 해당 조치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 의2).

법률 제 호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1. 전통사찰 주변의 수목 제거, 방염포 설치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·대비·대응하기 위한 조치
- 2. 배수로, 석축 정비 등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·대비·대응하기 위한 조치
- 3.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긴급 이전 등 보호 조치
- 4. 그 밖에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
-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	1. 전통사찰 주변의 수목 제거, 방염포 설치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・대비・대응하기 위한 조치 2. 배수로, 석축 정비 등 수해 로 인한 피해를 예방・대비・ 대응하기 위한 조치 3.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긴급 이전 등 보호 조치 4. 그 밖에 자연재해로부터 전
<u><신 설></u>	동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로서 문화체육관광 부렁으로 정하는 조치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 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 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